



Q 지하주차장의 주차장을 제외한 기타 코어, 팬룸, 창고 등을 방화구획하였는데, 방화구획 벽을 횡방향으로 설치하고 방화구획벽 하단부에 종 방향으로 가로질러 오픈트랜치를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메울 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트랜치 시공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화재 시 틈을 메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특수건물 관리자입니다. 소방서의 소방검사와 자체점검을 받았는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점검을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 방재기술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특수건물할인을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검사와 자체점검은 소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은 손해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물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없으니까 양쪽 다 유리합니다.

특히 소방검사와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은 화재관련 모든 분야를 종합 진단해서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지만 특수건물에서의 안전점검비용은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Q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특수건물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제회 화재보험 가입은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고이전으로 되돌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은 사고 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여러 소방시설 및 관련시설이 항상 정상 동작되도록 유지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화재발생요인을 찾아 제거 또는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층은 6층으로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고, 지하3층 건물로 지하층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물인데, 1층 피난층에도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에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 내에 별도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피난층(1층)에도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Q 저희 아파트에서 단체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의 담보내용 중에 각 세대 내 가재도구 관련하여 3천만 원 한도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서 불이 나서 윗집으로 옮겨 불어 피해를 받을 경우, 각 세대의 가재도구에 들어있는 보험으로 윗층까지 모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즉 피해액이 저희집 4천만 원 윗집이 4천만 원 발생)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각 세대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3천만 원씩 보험가입을 하였으므로 윗세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를 발생시킨 세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을 청구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보험가액이 4천만 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화재로 4천만 원 피해를 본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므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